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6
----------	-----

2025. 4. 30.(수)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체 근거 조항에 대한 상위법을 명시하여 입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근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과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각 조문의 위치 등에 대해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례 개정을 입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책무 규정을 행정 주체인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4조)
-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 존중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독립대등한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의무부과 내용 삭제(안 제4조, 안 제5조)
- 조례 규정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위한 조항 변경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13조)
-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기존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실적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현행 조례는 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 명시가 누락되어 입법체계 정합성이 미흡함
- 지방자치법상 도와 시군의 관계 정립, 용어의 체계적 사용 등에서 정비가 요구되며, 특히 도지사의 책무,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은 행정 실무와 부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충청북도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추진됨

나. 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3대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입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조~제3조는 기본원칙 및 정의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문장의 명료성과 조례의 해석 가능성을 제고함. “환경 친화적“ 등 복합어 표기와 문장 구성 개선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임
- 안 제4조는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책임의 주체를 명료히 하고, 행정기구별 책무 구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바람직함
- 안 제5조의 삭제는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도-시군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를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 또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보고 의무에 법령 근거를 반영하여 조례의 집행력과 적법성을 강화함
- 안 제14조, 제16조의3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정비로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과 해촉 사유를 명문화한 점은 행정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에너지법」 제7조는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기존 조례의 불명확성,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함
- (타당성) 위원회 구성, 책무 규정, 에너지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이 상위법령에 기초하여 구체화 되었으며, 조례 운영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함
- (법적합성) 상위법령 위반 또는 법제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으며, 문장 구성과 용어 정비는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함
- (종합의견) 충청북도 에너지 정책의 기반 정비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은 종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56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6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이종갑,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임병운

1. 제안이유

-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체 근거 조항에 대한 상위법을 명시하여 입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근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과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각 조문의 위치 등에 대해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례 개정을 입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을 제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

조의2, 안 제16조의3,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책무 규정을 행정 주체인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안 제4조)
-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 존중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독립대등한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의무부과 내용 삭제 (안 제4조, 안 제5조)
- 조례 규정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적 일관성을 위한 조항 변경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13조)
-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 의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비 용 추 계 : 비용추계 제외사유서 첨부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으로,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을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 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민참여”를 “도민 참여”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계”라 함은 “체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료”라 함은”을 ““연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업자”라 함은”을 ““사업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를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설비”라 함은”을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 보급 촉진법」 제31조”를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 중 “검토서”라 함은”을 각각 “검토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설치확인서”라 함은”을 “설치확인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 중 “에너지”라 함은”을 “에너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시민단체”라 함은”을 ““시민단체”란”으로 한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는”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를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는”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도는”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도민에게 알려”를 “알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도는”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로, “공개 하여야”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4항 중 “협조 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3항 중 “검토서·설치면제”를 “검토서·설치면제”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미 활용”을 “미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응”을 “협조”로 한다.

① 도지사는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를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로, “계획” 이”를 “계획”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단체 등 관계자

다.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1인을 두되”를 “1명을 두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심의대상”을 “위원이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를”을 “기피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의결”을 “심의 · 의결”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위원의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으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을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 제목 “(산업 부문)”을 “(산업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25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송 부문)”을 “(수송부문)”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건물 부문)”을 “(건물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27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공공 부문)”을 “(공공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용(官用)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 할”을 각각 “지원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서는포상 또는 표창”을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u>환경 친화적인</u>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생략) 4. <u>도민참여</u>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	제2조(기본원칙) ----- ----- <u>에너지 관련시</u> <u>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 사</u> <u>항이 반영되도록 노력--.</u> 1. (현행과 같음) 2. <u>환경친화적</u> ----- ----- 3. (현행과 같음) 4. <u>도민 참여</u>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제3조(정의) ----- ----- ---.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 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₆)을 말한다.

5. (생략)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 체계”란 -----

-----.

3. “연료”란 -----

-----.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

-----.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략)

11.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7. “사업자”란 -----

--.

8. -----이란 --

-----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17조-----
-----.

9. -----이란 -----

--.

10. (현행과 같음)

11. -----이란 -----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4.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생략)

16.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12. -----이란 -----

-----.

13. -----이란 -----

-----.

14. -----이란 -----

-----.

15. (현행과 같음)

16. -----설비”란 -----

-----.

17. -----이란 -----

-----.

18.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

19.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
·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
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
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
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의 설치면제신청서를 신·재
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
과(이하 “설치면제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인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

18. ----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진법」 제31조 -----

-----.

19. -----이란 -----

-----.

20. -----
-- 검토서”란 -----

--.

21. -----
--- 검토서”란 -----

-----.

22. ----- 설치확
인서”란 -----

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한 것(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말한다.

23. “미 활용 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4.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23. ----- “에너지”란 -----

-----.

24. “시민단체”란 -----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

② 도지사는 -----

-----.

③ 도지사는 -----

노력하여야 ---.

④ 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 도는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 시·군은 도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

④ 도지사는 -----

-----.

⑤ 도지사는 -----

-----.

⑥ 도지사는 -----

----- 알려 -----
-----.

⑦ 도지사는 -----

-----.

⑧ 도지사는 -----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 공개하여야 -----.

<삭 제>

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군은 도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 ② (생략)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서·설치면제 검토서 및 확인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붙일 수 있도록 센터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

제9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검토서·설치면제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협조하여야 ---.

제7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 이

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
(이하 “지역에너지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6. (생략)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
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
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 활용 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대책

9. · 10. (생략)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
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1항-----

8. 미 활용 -----

9.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협조-----.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
획) ① ----- 법 제6조제1항

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리
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
나 협회 및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
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
----- 계획”이-----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
하여야 --.

<삭제>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

----- 1명을 두며, -----
-----.

제1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

-----.

1.·2. (현행과 같음)

3. ----- 위원이 심의대상-----

② -----

----- 기피
여부를 -----
-----.
-----.

③ -----

----- 심의·의결-----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생략)

제18조(산업 부문)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협력

-----.

제16조의3(위원의 해촉) -----
----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
----- 해촉-----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

-----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

5. (현행과 같음)

제18조(산업부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25조-----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19조(수송 부문) ① ~ ⑤ (생략)

제20조(건물 부문) ① ~ ④ (생략)

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21조(공공 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송부문)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건물부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행 여부-----

--- 「건축법」 제27조-----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부문)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
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
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
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생 략)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관용(官用)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5.·6. (생 략)

③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
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
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
을 위하여 도시·택지·혁신도
시 등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
·군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

---- 「대기전력저감 프로
그램 운용 규정」-----

--

4.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용 -----

5.·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3조(재정지원) ① -----

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에너지 상)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원할 -----
-----.

② -----

----- 지원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에너지 상) -----

--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

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과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각 조문의 위치 등에 대해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이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 작성자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장 전 광 호